

● 제33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3034)

2025. 09. 0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034

I.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출자 : 시장

나. 제출일자 : 2025년 08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2. 제안이유

-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적기 치료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료비 및 의료비 융자 이자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4호 ~ 제5호)

나.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대상 및 환수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건의료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7. 17. ~ 7.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한삼희 (02-2133-7509)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취지

- 개정안은 생계곤란 등 경제적인 사유로 질병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서울시가 의료비 용자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에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을 통해 ①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② 충청북도는 서울시 대표 교육사다리 정책인 ‘서울런’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협약을 맺음(참고1 참조).
- 위 협약(2024. 12. 23.)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① 의료비 후불제 1차 TF회의(2025. 1. 21.), ② 전문가 자문회의(2025. 5. 7.), ③ 유관기관 업무협약(2025. 5. ~), ④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범사업 추진 시 협의 제외/2025. 7. 22.) 등을 거쳤고,

이러한 과정에서 서울시는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2026년 1월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 사업’의 추진 근거(조례상 명칭: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를 마련하기 위함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뜻은 -----.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하는 의료기관	나. ----- ----- 공공의료기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다.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신설>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신 설>

<신 설>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
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용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제8조(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

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
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
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
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

- 현재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① 긴급복지 지원제도, ② 재난적 의료비 지원, ③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④ 암환자 의료비 지원, ⑤ 장애인 의료비 지원, ⑥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비 지원, ⑦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등이 있음.

<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현황 >

연번	사 업 명	기 관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1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법)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2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법)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지원 (연간 180일, 5천만원 한도)
3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한 자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금 상한액(최대 808만원)을 초과한 경우 공단에서 부담 및 사후 환급
4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관리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원, 최장 3년)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차상위대상 등록장애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지원 (1차의료 75%, 2·3차의료 15%)
6	국가보훈 대상자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법)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보훈병원 외 위탁병원 진료시 입원 30일, 요양병원 90일 이내 병원비 지원)
7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응급의료법)	보건복지부 (심평원)	응급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자	심평원에서 의료비 병원에 대납 후 환자에게 징수 (무이자, 48개월 할부)

자료: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 제출자료(2025. 8. 19.),

- 위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 이용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해 왔음. 그러나 대부분 위기 발생 이후 또는 진료비를 선지출한 이후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후 보장 중심의 구조를 갖고 있어, 경증 질환이나 비응급 상황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 이용 수요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함¹⁾.

- 이러한 국가 제도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임플란트나, 치아교정 등을 포함한 14개의 경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도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편으로, 충청북도는 2023년 1월 9일부터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²⁾.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의 주요 내용 >

구분	내용
사업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장애인 ⑤ 국가유공자 ⑥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 ⑦ 산모 ※ 단 치료목적의 치아교정비 지원 특례 대상자는 ②~⑤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
대상 질환	■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틀니 ■ 척추 ■ 암 ■ 호흡기 ■ 골절 ■ 안과 ■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 심혈관·뇌혈관 ■ 소화기(담낭, 간 위, 맹장) ■ 산부인과 ■ 비뇨기와
대출지원 범위	■ 의료비 중 자기부담금(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대상질환 수술(시술)로 인한 3개월 이내의 재활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식대 등 ■ 1인당 1회 50∼300만 원 ※ 단, 치아교정 특례 적용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대출상환	■ 대출기간 : 대출일~최대 3년 ■ 상환방식 : 대출일 익월부터 매월 분할상환(무이자,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가능)

자료: 충청북도(2025. 7.), 의료비후불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p.21

-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도민 중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산모를 대상으로 위 14개 질환의 수술 및 시술에 소요된 자기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50~300만 원을 금융기관이 대납하고, 무이자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 충청북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무이자 조건의 분할상환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 또 이자보전 외에도 연체 발생 시 충청북도는 일정 요건 하에 미상환금에 대한

1) 충청북도(2025. 7.), 의료비후불제 성과분석 연구용역, p.18-19

2) 위 연구용역 보고서, p.19

대위변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후 채권관리 절차를 통해 회수를 진행하고 있음³⁾.

- 이러한 충청북도의 ‘충북형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서울시가 도입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서울시는 이미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 ① 안전망병원, ②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장기체납)나 의료수급권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거나, 후원금 등 재원 활용 및 감면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해 왔음.

< 서울형 기존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사업과 비교 >

구분	안전망 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시범사업(안)
운영 개요	무료진료를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과 시립병원이 연계하여 의료 취약계층에 의료서비스 제공	시립병원 퇴원 환자 및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복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합 연계하여 적합한 의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대상 의료비 용자(이자)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적기 치료 도모
지원 대상	①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장기체납) ② 의료수급권자 ③ 외국인(근로사실이 확인되는 미등록외국인) ④ 노숙인 ⑤ 거주 불명자 ⑥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① (지역사회→시립병원) 지역 관계기관 의뢰 또는 자체 발굴한 *의료취약계층 ② (시립병원→지역사회) 복합적인 의료요양돌봄 지원이 필요한 시립병원 퇴원환자 *의료급여·차상위계층·행려노숙환자 등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입원(수술, 중증질환), 외래, 검사 등으로 발생한 자기부담금 전액 지원	MRI, CT 등 검사비용과 외래 및 입원치료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 일부 지원(후원금 또는 감면 등)	13개 질환 임플란트(틀니 포함),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지원 방식	(1차 진료) 민간병원(무료진료)에서 진료 후 추가적인	(재원) 병원후원금, 지정기탁금, 위기긴급지원기금 등	대출 이자 지원 지원대상 질환의 수술(시술)

구분	안전망 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시범사업(안)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시립 병원에 의뢰 (2차 진료) 시립병원은 민간 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 를 진료 후 안전망병원 사 업비로 본인부담금 처리	(절차) 건강돌봄 대상자 적격 성심의 후, 의료적 지원에 대해 공적재원을 우선 검토 하되 활용이 불가하거나 한 도 초과 시 병원후원금 등 재원 또는 감면 처리	과 관련된 의료비를 금융기 관에서 대출 후 무이자 장 기 분할상환(최장 3년), 市 에서는 이자 지원
수행 기관	민간병원 : 성가복지병원, 다 일천사병원, 요셉의원 시립병원 : 서울의료원, 동부 병원, 보라매병원, 서남병원	시립병원 9개소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 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 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 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市에서 직접 수행 - (참여병원) 서울의료원, 보 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 원 ※ 참여 금융기관 협약 예정

- 그런데,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제도나 사업의 ‘확대’가 아닌, 공적 대출을 통해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시, 서울시의 ‘상환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점검이 필요함.
- 현재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의 미상환율은 2025년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자(1,401명) 중 3.2%(45명)로 높은 상환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p. 15 참조) 상환 실패 시,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록 등 동 사업은 구조적인 리스크가 잠재함.
-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32.3%는 의료비후불제 대출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⁴⁾,
- 의료비 후불제 1차 TF회의(2025. 1. 21.)에서 충북 의료비후불제팀장은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지자체에서 채권 추심⁵⁾ 등을 직접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 “향후 위탁 등 고민하고 있으며, 서울은 시립병원 위주로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조언함⁶⁾.

4) 위 연구용역 보고서, p.124

5)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6)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TF 회의(1차) 결과

- 아울러,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 관련하여, 지난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을 당시에 서울시는 반대(보류) 입장이었다는 점도 심사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⁷⁾.

다.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대상’ 관련

- 개정안 제8조제1항 각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의료비 용자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제8조(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대상) 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비 용자 이자를 예

7) 「서울특별시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충청도에서 시행 중인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1)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과의 중복여부, 2)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으로 대상자 및 재정 추계 필요 (서울시와 충북과의 인구규모 차이 고려한 산정 필요), 3) 참여기관(금융·의료) 협의, 전문가 의견수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등 조례 제정을 위한 각종 사전 준비절차 이행 등 제정 이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 1) 복지정책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시민건강국 ‘안전망병원’, 정부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복지사업을 기시행 중으로, 기존 사업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 필요
- 2) 충북도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총 11만명을 지원대상으로 하나, 동 조례안은 ① 65세 이상인 자(서울시 169만명), ②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서울시 47만명)을 대상으로 하여, 충북도보다 지원대상 범위가 넓어, 대규모 예산소요가 예상됨 ※ 충북도 연 25억원
- 3) 충북도는 해당 조례 제정 전, 연구용역 -> 6차례 전문가 회의 ->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승인 -> 병원·금융기관 섭외 및 협약체결 -> 사업 매뉴얼 수립 등 6개월 이상의 사전 준비절차를 거친 후 조례 제정(도지사 발의)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액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④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의 한도, 기간, 지원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현재 개정안에 따른,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안 제8조제1항 각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안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음.

-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위를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⁸⁾’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즉,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층에는 ‘6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자녀가 한 명인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라.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관련

- 다음으로 개정안 제2조제3호다목 및 같은 조 제4호·제5호에 따르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 질환’에는 비급여 항목까지도 포함되어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안전망병원”이라 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공공보건 의료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으로 다음의 각 목과 같다. 가. (생략) 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의	제2조(정의) ----- ----- 뜻은 -----. 3. “안전망병원”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 -----. 가. (현행과 같음) 나. -----

8)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료영역을 수행하는 민간의
료기관으로서 공공의료기
관과 서비스 역할을 분담
하는 의료기관

다. 공공의료기관이란 민간의
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하
는 시립병원

<신 설>

<신 설>

----- 공공의료기
관(민간의료기관(무료)과
연계되어 공공의료서비스
를 지원하는 시립병원)---

-

다. 의료비 융자 이자 지원 사
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

4. “의료비”란 질병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수술 및
시술과 직접 관련된 비용(비
급여 비용을 포함한 본인부담
금)을 말한다.

5. “의료비 융자 이자”란 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금융
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말한다.

- 또한 서울시(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질환과 거의 동일하게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포함한 13개의 경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함.

< 충청북도 모델과 비교 및 분석 >

지 자 체 항 목	충청북도	서울시(안)
추진근거	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응자지원 조례 * (사업시행) '23.1.9.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조례개정안 제출(제332회 상정 예정)
운영조직	道 직영 (1팀 4명) * 향후 민간위탁 추진 검토	市 직영
지원대상	▶ 65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가족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질환	14개 질환 임플란트 식립, 치아교정, 틀니,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 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총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13개 질환 * 치아교정 외 동일
대출한도	50만원 ~ 300만원 * 대출한도 상향을 위해 복지부 협의 중	50만원 ~ 500만원
참여병원	289개소 * 종합병원 13, 병원 21, 의원 255	4개소 * 종합병원 4
기 타	【충북 의료비후불제 분석('25.6월말 기준)】 ▶ (대출실행) 77.7% (실행 1,401명 / 신청 1,803명) - 연체율 3.2% (총 45건 ; 대위변제 23건, 1월 이상 미납 22건) ▶ (이용현황) - 임플란트(75.0%, 1,354명) > 치아교정(7.2%, 131명) > 척추(5.2%, 94명) 순 - 청주(56.2%, 1,014명) > 충주(14.5%, 263명) > 음성(9.7%, 176명) 순	

- 현재 위 기타 항목에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특정 비급여 진료에 이용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는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향후 서울시립병원들은 단순히 신청자 수나 이용 건수 중심의 성과보다, 해당 진료나 시술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혹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과잉 진료나 특정 비급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책임성’ 기반의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 그밖에 개정안 제2조(정의)는 현행 정의에 “~라 함은”과 같은 표현을 단순하고 간결하게 “~란”으로 정비하면서 기존 안전망병원의 정의에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시립병원’을 추가로 정의하려는 것이고, 제3조(시장의 책무)는 “서울특별시장”의 약칭을 해당 문장이 처음 나오는 조문(제3조에서 제2조제3호로 이동)에 규정하는 등 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2. 종합의견

- 서울시는 충청북도와 우수정책 교류 업무협약(2024. 12. 23.)을 통해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사업 도입을 검토해 왔음.
- 이번 개정안은 향후 서울시가 2026년 1월부터 추진하려는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추진 근거(조례상 명칭: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를 마련하기 위함임.
- (①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도입 필요성) 서울시가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포함한 13개의 질환의 수술 및 시술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50~500만원을 금융기관이 대납하고, 무이자(서울시는 대출에 따른 이자 전액을 부담, 연체 발생 시 대위변제 및 채권관리 수행) 장기 할부 방식으로 상환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다만, 서울시는 이미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외에 추가로 ① 안전망병원, ②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제한자(장기체납)나 의료수급권자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거나, 후원금 등 재원 활용 및 감면 등을 통해 ‘일부’ 지원해 왔음.

- 그런데,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기존제도나 사업의 ‘확대’가 아닌, 공적 대출을 통해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시, 서울시의 ‘상환 리스크 관리 방안’도 점검이 필요함.
- (②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대상’ 관련)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용자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다자녀 가족’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계층에는 ‘6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자녀가 한 명인 가족’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 설정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해 보임.
- (③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관련) 현재 개정안과 서울시(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충청북도의 의료비 후불제 사업 대상질환과 거의 동일하게 임플란트나, 틀니 등을 포함한 13개의 경증 질환이나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함.
- 기사행 중인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분석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 치아교정 등 특정 비급여 진료에 이용이 편중되고 있다는 점을 서울시는 참고할 필요가 있고, 향후 서울시립병원들은 해당 진료나 시술이 의료적으로 ‘필수적인 혹은 필요한’ 항목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과잉 진료나 특정 비급여 편중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과 ‘책임성’ 기반의 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후불제 추진을 위한
서울시 - 충청북도

업 무 협 약 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충청북도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질병치료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 용자를 지원해 주는 "의료비 후불제"사업의 서울시 도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모델을 활용하여 서울시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각 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히 협력한다.

제3조(협력내용) 양 기관은 서울시 의료비 후불제 도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 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며 협력하기로 한다.

1. "서울시"의 역할

- 가. 서울시-충청북도 및 의료단체 등 참여 기반 공동 TF 구성·운영
- 나. 사업대상자, 지원범위 등 구체적 사업(안) 마련

2. "충청북도"의 역할

- 가. TF참여 및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위한 노하우 및 자료 공유
- 나. 의료단체 및 금융권 민간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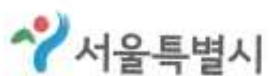
제4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기간에 관한 통보가 없으면 매년 자동으로 효력이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 및 조정) 각 기관은 협약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서에서 정한 협력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세부 사항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목적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상대방의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하고,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서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장이 각 서명한 후 각 1부를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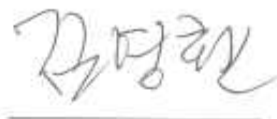
2024년 12월 23일



시장 오 세 훈



도지사 김 영 환



참고 2 서울시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충북 모델 장점을 벤치마킹,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 설계

□ 시범사업 설계(안)

- (지원대상) 65세 이상 또는 다자녀 가족(2자녀 이상) 중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 제332회 임시회 ‘안전망병원’ 조례 개정안 제출, 사업근거 마련
- (사업내용) 금융기관에서 의료비 대출 후 무이자(최장 3년) 분할상환
 - 市에서 이자 지원, 환자는 목돈지출 부담 경감으로 적기 치료 가능
- (참여병원) 시립병원 4개소 시범운영,
 - 효과성 분석 후 민간 확대(본 사업) 검토
 - 진료과목, 외래진료 및 수술 건수 등 고려
 -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서남병원 시
 - 권역별 선정하여 내원환자 접근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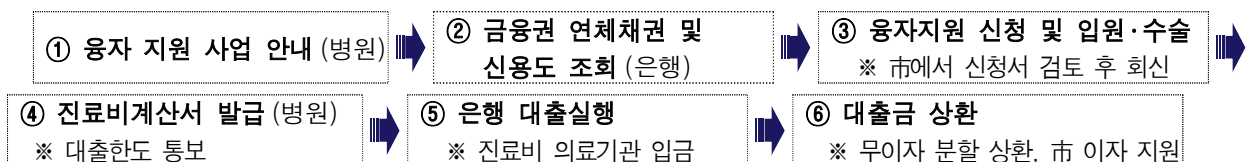


기준)

대 상 (진료과목, 병상)	서울의료원 (26개, 651병상)	보라매병원 (25개, 765병상)	동부병원 (17개, 201병상)	서남병원 (18개, 297병상)
1일 외래진료/수술	1,188 / 17	2,114 / 40	238 / 1	268 / 3

※ 시립병원 7개소(직영 3, 정신병원 3, 북부병원) 수술실 미운영

- (대출한도) 1인당 50만원 ~ 500만원 ※ 수술비(시술비), 입원비 등
- (대상질환) 13개 항목(수술 및 시술 포함된 질환, 미용 목적 제외)
 - 임플란트(틀니 포함), 인공관절(슬/고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암, 소화기(담낭·간·위·충수염), 호흡기,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골절, 안과
- (운영규모) 대출금 10억원 (250만 * 400명) ※ 대출금리 5% 내외
- (사업흐름)



- (소요예산) 연 120백만원 (이자보전금 및 배상금등)

참고 3 향후일정

- 시범사업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 : ~ '25. 9. (제332회 임시회)
 - (대상조례)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세부일정) 상임위 심사(8~9월), 본회의 의결(9.11.), 조례 공포(9.29.)
- **투자심사 의뢰 및 심의** : ~ '25. 10.
 - 지방재정법 제37조 의거 '보증채무부담행위'는 투자심사 대상
 - 투자심사 의뢰(→ 재정담당관, '25.8.) 및 위원회 심의('25.10.)
-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시의회 동의** : ~ '25. 11. (제333회 정례회)
 - 市에서 미상환금 부담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 필요

지방자치법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25. 12.
 - 전문가 자문 및 운영지침(매뉴얼) 수립
 - 참여기관(시립병원 및 은행) 협약 체결
-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시행 : '26. 1. ~